

명예졸업에 관한 규정

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명예졸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자격) 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제적된 자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,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

1. 국가와 민족의 명예를 빛내고 국가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
2. 본 대학교와 한국교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

제3조 (인정학과) 명예졸업 학과는 명예졸업 대상자가 본 대학교에 재학했던 학과로 한다. 단, 명예졸업자는 교육부에 보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.

제4조 (심의 및 수여시기) ① 명예졸업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교무위원회에서 명예졸업 여부를 심의한다.

② 명예졸업증서의 수여는 매년 2월과 8월, 2회로 한다.

제5조 (기록) 명예졸업증서 수여자는 별도의 수여대장에 기록한다.

제6조 (증서양식)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명예졸업 증서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.

제7조 (졸업의 취소) 명예졸업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, 즉시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의 개정) 본 규정의 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<별지 서식(1)>

명예 호

명 예 졸 업 증 서

성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위 사람은 본대학교 명예졸업규정에 따라 제 회
졸업자로 인정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.

년 월 일

서울신학대학교 총장 ○ ○ 박사 ○ ○ ○ (인)